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5. 6. 3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6. 14.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5. 6. 16.
- 다. 상정일자 : 제113회 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05. 6. 30)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창수 청소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1998년 5월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관련업체의 경영난으로 주민서비스질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 현 행 : 18ℓ 당 230원
 - 개 정
 - 기본요금 : 400ℓ 까지 10,000원
 - 초과요금 : 10ℓ 당 150원

○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 기본요금 : 0.75㎡까지
 - 현행 17,680원을 18,810원으로 인상
- 초과요금 : 0.1㎡당
 - 현행 1,160원을 1,450원으로 인상

○ 야간할증 신설

- 야간에 청소를 실시할 경우 요금의 7.0% 가산
 - * 야간 청소시간 : 19:00부터 익일 06:00까지

○ 지하할증 신설

- 흡인식 차량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의 경우 요금의 7.0% 가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5. 3.31 법률 제7428호)제18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 수수료를 1998년 5월 조정한 이후 7년 간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관련업체의 경영난으로 수수료의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 하였음.

- 동 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 제10조 관련 【별표3】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중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행 18ℓ 당 230원 →기본요금 400ℓ 까지 10,000원, 초과요금 10ℓ 당 150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 0.75㎡까지 현행 17,680원→18,810원으로, 초과요금 0.1㎡당 현행 1,160원→1,450원으로 인상하며, 정화조 청소시 야간에 청소를 실시할 경우와 흡인식 차량외 대형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의 경우 요금의 7.0%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안)에서 청소수수료는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물가안정 및 업체의 수거원가 등을 반영하여, 분뇨 수집·운반요금은 출장요금을 포함한 기본요금제를 신설하고, 초과요금의 경우에는 기준조정 및 17.2% 인상하였으며, 정화조 요금은 기본요금(0.75㎡) 6.4%, 초과요금(0.1㎡당) 25% 각각 인상하였음.
- 2005년 6월 기준, 서울시 각 자치구별 청소수수료 인상 현황(자료: 별첨)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에서 청소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추진중인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정화조 오니 기본요금 17,680원을 18,810원으로 인상하여 정화조 기본요금(0.75㎡)은 6.4%대, 초과요금(0.1㎡당)은 16.9%~17.7%대로 인상하였고, 분뇨 청소수수료는 대부분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였으며, 기타 5개 자치구는 추진 예정 중에 있는 바, 우리구 분뇨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수수료의 인상은 관련 업체의 수거원가에 의한 수수료 산정,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각 자치구별 청소수수료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이매숙 위원) : 구별로 비교하면 20%이상은 없는데?
- 답변요지(김창수 청소환경과장) : 물가인상율26.2%을 감안하였음.
- 질의요지(한수균 위원) : 별표3 야간시간 19:00-06:00를 현실에 맞게 22:00-04:00 조정했으면 함.
- 답변요지(김창수 청소환경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질의요지(김순금 위원) : 타구보다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 답변요지(김창수 청소환경과장) : 타구는 중간에 올렸고, 우리구는 7~8년동안 안올려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음.
- 질의요지(이종일 위원) :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기 바람
- 답변요지(김창수 청소환경과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5. 6. 30 한수균 위원외 1인
- 나.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 별첨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5. 6. 30.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물가상승에 따른 관련업체의 경영난으로 청소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물가안정 및 구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청소수수료의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가.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수수료의 초과(0.1㎡당)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함(안 별표 3)
- 나. 야간청소시간은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함.(안 별표3)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관련 【별표 3】 부과금액란 중 “1,450” 을 “1,430” 으로 한다.

안 제10조 관련 【별표 3】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간청소시간은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 별표3 】 분뇨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제10조제1항관련) (단위 : 원)				【 별표3 】 분뇨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제10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분뇨	(생		략)		분뇨		(원안과	같음)	
오수처리시	(생		략)		오수처리시		(원안과	같음)	
설·단독정	초 과	0.1m'당	1,450		설·단독정화	초 과	0.1m'당	1,430	
화조 및 축	(생		략)		조 및 축산		(원안과	같음)	
산폐수배출					폐수배출시		(원안과	같음)	
시설					설				
비고 : 1. (생략) 2. 야간청소시간은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비고 : 1.(원안과 같음) 2. 야간청소시간은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5. 6.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1998년 5월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관련업체의 경영난으로 주민서비스질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 현 행 : 18ℓ당 230원
- 개 정
 - 기본요금 : 400ℓ까지 10,000원
 - 초과요금 : 10ℓ당 150원

나.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 기본요금 : 0.75m'까지
 - 현행 17,680원을 18,810원으로 인상
- 초과요금 : 0.1m'당
 - 현행 1,160원을 1,450원으로 인상

다. 야간할증 신설

- 야간에 청소를 실시할 경우 요금의 7.0% 가산
- * 야간 청소시간 : 19:00부터 익일 06:00까지

라. 지하할증 신설

- 흡인식 차량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의 경우 요금의 7.0% 가산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 (1)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따라
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1) 입법예고 : 2005. 5. 16 ~ 2005. 6. 7 (특이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05. 6.10)
-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관련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3 】

분뇨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제10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 뇨	기 본	400ℓ	10,000	
	초 과	10ℓ당	150	
오수처리시설·단독 정화조 및 축산 폐수배출시설	기 본	0.75m ³	18,810	
	초 과	0.1m ³ 당	1,450	
	지하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0%	
	야간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0%	

- 비고 : 1. 정화조 지하할증 요금은 흡인식 차량의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에 한하며 자체 가압펌프 사용시 제외
2. 야간청소시간은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신·구조물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3] 분뇨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부과기준</th> <th>부과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분뇨</td> <td style="text-align: center;"><u>18</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30</u></td> <td></td> </tr> <tr> <td rowspan="2">오수처리 시설·단독정 화조 및 축 산폐수배출 시설</td> <td>기본</td> <td style="text-align: center;">0.75㎡</td> <td style="text-align: center;"><u>17,680</u></td> </tr> <tr> <td>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0.1㎡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u>1,160</u></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뇨	<u>18</u>	<u>230</u>		오수처리 시설·단독정 화조 및 축 산폐수배출 시설	기본	0.75㎡	<u>17,680</u>	초과	0.1㎡당	<u>1,160</u>	<p>[별표 3] 분뇨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부과기준</th> <th>부과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분뇨</td> <td>기본</td> <td style="text-align: center;"><u>40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000</u></td> </tr> <tr> <td>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0</u>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u>150</u></td> </tr> <tr> <td rowspan="4">오수처리 시설·단독정 화조 및 축 산폐수배출 시설</td> <td>기본</td> <td style="text-align: center;">0.75㎡</td> <td style="text-align: center;"><u>18,810</u></td> </tr> <tr> <td>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0.1㎡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u>1,450</u></td> </tr> <tr> <td>지하합중</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화조청소요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u>7.0%</u></td> </tr> <tr> <td>야간합중</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화조청소요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u>7.0%</u></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비고: 1. 정화조 지하합중 요금은 흡인식 차량의 대형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에 한하며 자체 가압펌프 사용시 제의</p> <p>2. 야간청소시간은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p>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뇨	기본	<u>400</u>	<u>10,000</u>	초과	<u>100</u> 당	<u>150</u>	오수처리 시설·단독정 화조 및 축 산폐수배출 시설	기본	0.75㎡	<u>18,810</u>	초과	0.1㎡당	<u>1,450</u>	지하합중	정화조청소요금	<u>7.0%</u>	야간합중	정화조청소요금	<u>7.0%</u>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뇨	<u>18</u>	<u>230</u>																																												
오수처리 시설·단독정 화조 및 축 산폐수배출 시설	기본	0.75㎡	<u>17,680</u>																																											
	초과	0.1㎡당	<u>1,160</u>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뇨	기본	<u>400</u>	<u>10,000</u>																																											
	초과	<u>100</u> 당	<u>150</u>																																											
오수처리 시설·단독정 화조 및 축 산폐수배출 시설	기본	0.75㎡	<u>18,810</u>																																											
	초과	0.1㎡당	<u>1,450</u>																																											
	지하합중	정화조청소요금	<u>7.0%</u>																																											
	야간합중	정화조청소요금	<u>7.0%</u>																																											